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7. 5. 13
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7년 4월 26일 이천시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7년 4월 30일
- 다. 상 정 일 자 : 제1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2차(97. 5. 12) 산업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조병돈)

가. 제안이유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건축법 제2조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함(안 제2조의 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업무에 종사하여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 건축법 제23조 제1항 및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의 업무대행 범위와 동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지정방법·업무대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온돌시공을 할수 있는 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 신설 규정함(안 제62조)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을 한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 건축법 제76조의 2 규정에 의거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조정함(안 제64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김태신)

건축법이 '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동법 시행령이 '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되어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97. 3. 17 ~ 4. 17(20일간) 입법예고 하였고, '97. 4. 10 건축위원회에서 수정의결된 사항으로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만장일치)

7. 기타사항 : 없음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이 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업무에 종사하여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제1항중 “영 제5조제3항제8호”를 “영 제5조제3항제9호”로 하고, 동조에 제11항 내지 제1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심의사항의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 ③건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59조와 법 제73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표준설계도서)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

제9조의 제목중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를 “확인업무의 대행”으로 하며, 동조 제1항 및 제2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3회 - 2차 본회의)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
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조사
8.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

②법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지정방법·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 제23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및 건축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등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규칙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규칙 제23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포함한다)와 이천지역건축사회의 지도·점검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3호중 "(너비 10미터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20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례식장

제21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장례식장

제22조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2. 장례식장

제2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장례식장

제26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

제27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축사

제28조제2호중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를 "(아파트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조 제6호중 "어업"을 "임업"으로 하고, 동조 제7호중 "가공공장 및" 다음에 "읍·면지역에 건축하는"을 삽입하고, 동조 제8호중 "(농업·축산업·수산업에 한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13호중 "위험물판매취급소" 앞에 "주유소"를 삽입한다.

제29조제2호중 "(너비 8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다세대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를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로 하고, 동조 제10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12호중 "주차장" 다음에 "세차장"을 삽입하고, 동조 제13호중 "농수산물 공판장에 한한다"를 "농수산물공판장과 통상산업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6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4종 미관지구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수직증축은 제외한다)

제51조제8호 내지 제10호중 "100분의60"을 각각 "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80)"으로 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3호중 "100분의20" 다음에 각각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을 추가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100분의60

제52조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40퍼센트

제54조제11호 및 제13호중 "350제곱미터" 다음에 각각 "(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를 추가하고, 동조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60제곱미터

(제13회 - 2차 본회의)

제6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0조의2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법 제62조제5항 및 영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이하
2.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2배이하
3.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의 1.2배이하

제61조제3항중 “의하여 건폐율등”을 “의한 용적률등”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동조동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수치가 당해지역 공지기준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동조동항제3호중 “1.2배 가산한 비율이하”를 “가산한 비율이하 다만,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한다.

제62조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 제3호를 삭제한다.

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등록을 한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가 또는 위임기관에서 시행하는 온돌기능계 교육을 이수한 자

제6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지하·지상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공장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방지·배출시설의 설비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6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천시 소속공무원과 법 제76조의2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동항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 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
- 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조정사항의 업무담당직장이 된다.
- ⑦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⑧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별지]를 삭제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2호서식]

건축분쟁조정안			
사건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피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정안			
<p>건축법 제7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결정된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수락여부를 년 월 일 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조정안에 불복이 있을 경우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인)</p> <p>(건축분쟁 각 담당자 귀하)</p>			

[별지 제3호서식]

건축분쟁조정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 정 안			
<p>건축법 제76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분쟁에 대하여 위 조정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의(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위신청인 : (인)</p> <p>위대리인 : (인)</p> <p>위피신청인 : (인)</p> <p>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인)</p>			
<p>※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p>			

[별지 제4호서식]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출 석	성 명	주소 또는 소속	자 격
대상자			참고인 또는 당사자
출석요구일자	년 월 일(:)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개최일자임		
출석장소			
<p>건축법 제7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위와같이 이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년 월 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이천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p> <p>(출석대상자 귀하)</p>			
<p>※ 주의사항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p>			

[별지 제5호서식]

건축분쟁 조정거부 및 중지 통보서			
사 건 명			
신청일자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대 리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피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신청내용			
건축분쟁 조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법 제76조의6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분쟁 조정을 거부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100px;">년 월 일</p> <p>(건축분쟁 각 담당자 귀하)</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중 <u>영 제5조제3항제8호</u>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생략) ②~⑩ (생략)</p> <p>(신설)</p> <p>제4조 (적용의 특례) ①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의 일부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p>	<p>제2조의2 (현장관리인) 법 제2조제17호 및 영 제3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업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1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업무에 종사하여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p> <p>제3조 (지방건축위원회) ①----- ----- 영 제5조제3항제9호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2. (현행과 같음) ②~⑩ (현행과 같음) ⑪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당해 심의사항의 업무담당계장이 된다. ⑬건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p> <p>제4조 (적용의 완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시행규칙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8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6조 내지 법 제59조와 법 제73조로 한다.</p>

현행	개정안
<p>1.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개축 또는 중전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범위</p> <p>가. 옥외계단·옥탑·계단탐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증축</p> <p>나. 건폐율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개축</p> <p>다. 법 제4장(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개축</p> <p>라. 기타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p> <p>2. 제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서 해당하는 범위</p> <p>가. 건폐율 : 녹지지역안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 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 이하, 기타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0분의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9이하</p> <p>나. 용적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5배이하</p> <p>다. 대지면적의 기준 : 당해지역, 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 이상</p> <p>라. 대지안의 공지 : 폭 0.5미터 이상으로서 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뛰어야 할 거리의 2분의1이상</p> <p>나.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할 길이 : 1.5미터이상</p> <p>②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후퇴함으로써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경우 건폐율 또는 대지면적의 최소</p>	

현행	개정안
<p><u>한도를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u></p> <p><u>1. 건폐율 :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10분의5이하, 주거지역의 경우 10분의7이하, 상업지역의 경우 10분의9이하, 기타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10분의8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0분의9이하</u></p> <p><u>2.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경우 당해지구에 적용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의 4분의1이상, 상업지역의 경우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2분의1이하, 기타지역(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포함한다)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3분의1이하.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4분의1이하</u></p> <p><u>제5조 (건축에 관한 계획의 사전결정)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u></p> <p><u>1. 전용주거지역안에서 층수가 5층 이상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u>2.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제18조제5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u></p>	<p><u>제5조 (표준설계도서)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작성한 설계도서와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설계도서를 말한다.</u></p>

현행	개정안
<p><u>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u>3. 준주거지역안에서 제19조제4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7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u>4.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7,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u>5.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제24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와 제25조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u></p> <p><u>6. 준공업지역내 건축물로서 영 별표 제11호 다목 및 마목의 건축물과 제26조제2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것</u></p> <p><u>7.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것</u></p> <p><u>②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u></p>	
<p>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u>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u>)</p> <p>(신설)</p>	<p>제9조 (현장조사·검사 및 <u>확인업무의 대행</u>)</p> <p>①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시장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p>

현행	개정안
(시설)	<p>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p> <p>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p> <p>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p> <p>4.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p> <p>5.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p> <p>6.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물의 조사</p> <p>7.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의 조사</p> <p>8.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현장조사 및 검사</p> <p>②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의 지정방법·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건축사법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는 법 제23조제1항, 영 제20조제1항 및 건축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감사등 확인업무를 대행하여야 한다.</p> <p>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장조사·검사등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규칙 제23호의6서식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조서(규칙 제23호의4서식의 공사감리 완료보고서를 포함한다)와 이천지역건축사회의 지도·점검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①(생략) ②(생략) 제10조 (건축지도원) ①(생략) <u>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여부 수당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u>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생략) ②영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4. (생략) 5.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건축하는 측사용도의 건축물(단, 법적조경면적 이상을 잔디·조경석등으로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④(생략)</p> <p>제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 ①시장은 영 제27조제3항의 의한 건축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각, 회화 등의 미술장식품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관련시설, 식물관련시설,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신축하는 건축물 2. 미관지구, 풍치지구, 업무지구내에 신축하는 건축물 ②미술장식품의 권장시기는 건축물의 사전결정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 접수시 권장하여야 하며, 이때 권장 및 설치계획서는 별지와 같다. ③미술장식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는 시장이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미술협회당해지부에서 예술성 및 자격 등에 대한 심의를 하고 건축물과의 조화 등을 확공신고전에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 수 있다.</p>	<p>③(현행 제1항과 같음) ④(현행 제2항과 같음) 제10조 (건축지도원) ①(현행과 같음) <u>②영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보수기준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u> 제11조 (대지안의 조경) ①(현행과 같음) ②----- ----- ----- ----- 1.~4. (현행과 같음) (삭제) ③~④(현행과 같음) (삭제)</p>

현	행	개	정	안	안
<p><u>④미술장식품의 설치방법, 심의기준 및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u></p> <p>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2.(생략)</p> <p>13. <u>자동차관련시설(너비 1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u></p> <p>14.~18.(생략)</p>	<p>제18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 <p>-----</p> <p>-----</p> <p>-----</p> <p>1.~12.(현행과 같음)</p> <p>13. <u>자동차 관련시설</u></p> <p>14.~18.(현행과 같음)</p>				
<p>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3.(생략)</p> <p><u>(신설)</u></p>	<p>제20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 <p>-----</p> <p>-----</p> <p>-----</p> <p>1.~13.(현행과 같음)</p> <p><u>14. 장례식장</u></p>				
<p>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5.(생략)</p> <p><u>(신설)</u></p>	<p>제21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 <p>-----</p> <p>-----</p> <p>-----</p> <p>1.~15.(현행과 같음)</p> <p><u>16. 장례식장</u></p>				
<p>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근린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21.(생략)</p>	<p>제22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p> <p>-----</p> <p>-----</p> <p>-----</p> <p>1.~21.(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3(생략)</p>	<p><u>22. 장례식장</u></p> <p>제23조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p> <p>1.~13.(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9.(생략)</p>	<p><u>14. 장례식장</u></p> <p>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p> <p>1.~19(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7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존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12.(생략)</p>	<p><u>20.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에 한한다)</u></p> <p>제27조 (보존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 -----</p> <p>1.~12.(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p> <p>1.(생략)</p> <p>2. 공동주택(<u>다세대주택에 한한다</u>)</p> <p>3.~5.(생략)</p> <p>6. 교육연구시설(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농업, 어업, 축산업,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p>	<p><u>13. 측사</u></p> <p>제28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 ----- -----</p> <p>1.(현행과 같은)</p> <p>2. 공동주택(<u>아파트를 제외한다</u>)</p> <p>3.~5.(현행과 같음)</p> <p>6. ----- -----<u>인업</u>----- -----</p>

현	행	개	정
<p>②~⑦(생략)</p> <p>제5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p> <p>1. ~7.(생략)</p> <p>8. 전용공업지역 : <u>100분의60</u></p> <p>9. 일반공업지역 : <u>100분의60</u></p> <p>10. 준공업지역 : <u>100분의60</u></p> <p>11. 보전녹지지역 : <u>100분의20</u></p> <p>12. 생산녹지지역 : <u>100분의20</u></p>	<p>합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2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제4종 미관지구와 너비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건축물의 외관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서 영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중축(수직중축은 제외한다)</p> <p>②~⑦(현행과 같음)</p> <p>제51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p> <p>-----</p> <p>-----</p> <p>-----</p> <p>-----</p> <p>1. ~7.(현행과 같음)</p> <p>8. ----- : <u>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80)</u></p> <p>9. ----- : <u>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80)</u></p> <p>10. ----- : <u>100분의7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80)</u></p> <p>11. ----- : <u>100분의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u></p> <p>12. ----- : <u>100분의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u></p>		

현	행	개	정	안	안		
<p>13. 자연녹지지역 : <u>100분의20</u></p> <p>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u>100분의60</u></p> <p>②(생략)</p>	<p>13. ----- : <u>100분의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40)</u></p> <p>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u>100분의60</u></p> <p>②(현행과 같음)</p>	<p>제5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 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 이하로 한다.</p> <p>1.~13.(생략)</p> <p>14.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영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 <u>400퍼센트</u></p>	<p>제52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p> <p>-----</p> <p>-----</p> <p>-----</p> <p>1.~13.(현행과 같음)</p> <p>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u>400퍼센트</u></p>	<p>제54조(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p> <p>1.~10.(생략)</p> <p>11. 보전녹지지역 : <u>350제곱미터</u></p> <p>12.(생략)</p> <p>13. 자연녹지지역 : <u>350제곱미터</u></p> <p>14. 도시계획구역중 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영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 및 영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 : <u>60제곱미터</u></p>	<p>제54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p> <p>-----</p> <p>-----</p> <p>-----</p> <p>1.~10.(현행과 같음)</p> <p>11. -----: <u>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u></p> <p>12. (현행과 같음)</p> <p>13. -----: <u>350제곱미터(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u></p> <p>14.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 <u>60제곱미터</u></p>	<p>(신설)</p>	<p>제60조의2 (도시설계지구안의 건축기준) 법 제62조제5항 및 영 제10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도시설계가 정하는 바</p>

현행	개정안
<p>제6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②(생략)</p> <p>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폐율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p> <p>1.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및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p> <p>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대지의 공지기준에 곱한 수치이하 (신설)</p>	<p>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그 건축기준을 완화한다.</p> <p>1.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에 벽면선이 지정되거나 건축선이 후퇴되어 지정된 경우 또는 층수가 제한된 경우의 건폐율은 당해지역에 대한 건폐율의 1.2배이하</p> <p>2. 도시설계에 의하여 용도가 제한되거나 대지의 일부를 보도·녹지등 공공지로 제공하는 경우의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대한 용적률의 1.2배이하</p> <p>3. 도시설계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이 제한되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는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의 1.2배이하</p> <p>제61조 (공개공지의 확보) ①~②(현행과 같음)</p> <p>③-----의한 용적률등-----</p> <p>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당해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p> <p>2. -----</p> <p>----- 다만, 그 수치가 당해지역 공지기준의 5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p>

현행	개정안
(신설)	<p>치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지하·지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물탱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2. 공장등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발전배출시설의 설비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3. 건축물 옥상에 설치하는 조경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p>제64조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①법 제7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제1호 내지 제7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천시 소속공무원과 법 제76조의2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동조동항제4호에 의한 건축공사 또는 건설업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③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p> <p>④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6조의3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⑤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 등의 의뢰를 할 수 있다.</p> <p>⑥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 1인을 두되, 감사는 당해 조정사항</p>

현 행	개 정 안
	<p>의 업무담당계장이 된다.</p> <p>⑦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p> <p>⑧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⑨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거부 및 중지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p>

현 행	개 정 안																																																						
<p>[별 지]</p> <p style="text-align: center;"><u>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 및 설치계획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bottom: 10px;">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서</th> </tr> <tr> <td style="width: 20%;">건 축 주</td> <td style="width: 15%;">주소</td> <td style="width: 25%;"></td> <td style="width: 40%;">성명</td> </tr> <tr> <td colspan="4">대 지 위 치</td> </tr>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의규모</td> <td style="text-align: center;">연면적</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층 수</td> <td colspan="2"></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주용도</td> <td colspan="2"></td> </tr> <tr> <td colspan="4">권 장 내 용</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이 천 시 장 ㉞ </div> -----(절 취 선)----- </td> </tr> <tr> <th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th> </tr> <tr> <td>건 축 주</td> <td>주소</td> <td></td> <td>성명</td> </tr> <tr> <td colspan="4">대지 위치</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미술장식품 종 류</td>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금액(추정)</td> </tr> <tr> <td colspan="4">설치 장소</td> </tr> <tr> <td colspan="4" style="padding: 5px;">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건 축 주 ㉞ </div> </td> </tr> </table>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서				건 축 주	주소		성명	대 지 위 치				건축물의규모	연면적			층 수			주용도			권 장 내 용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이 천 시 장 ㉞ </div> -----(절 취 선)-----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건 축 주	주소		성명	대지 위치				미술장식품 종 류	금액(추정)			설치 장소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건 축 주 ㉞ </div>				<p>(삭제)</p>
미술장식품의 설치권장서																																																							
건 축 주	주소		성명																																																				
대 지 위 치																																																							
건축물의규모	연면적																																																						
	층 수																																																						
	주용도																																																						
권 장 내 용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미관향상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하여 귀하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에 상기내용의 미술장식품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이 천 시 장 ㉞ </div> -----(절 취 선)-----																																																							
미술장식품설치계획서																																																							
건 축 주	주소		성명																																																				
대지 위치																																																							
미술장식품 종 류	금액(추정)																																																						
설치 장소																																																							
건축법시행령 제27조제3항 및 건축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장한 미술장식품을 상기와 같이 설치하고자 합니다. <div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50px;"> 년 월 일 건 축 주 ㉞ </div>																																																							